

전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이춘효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1. 6. 18. 접수 제15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6. 16.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C이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C이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물론, 그 증여가 C이 원고를 부양하는 부담이 부과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C에게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부담부 증여의 상대방이라는 C이 아닌 피고에게 구하는 법률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과연 소송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